

2019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동아ST(주)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8조 제7호의2에 따라 지배구조 관련 현황에 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동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동 보고서 내 지배구조 관련 현황은 2019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보고서 내 지배구조 관련 활동내역의 경우 본문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의 내역임을 알려 드립니다.

목차

I. 기업의 개요	4
II. 기업지배구조 일반	5
1.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5
2.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5
3. 지배구조 특징	6
4. 지배구조 현황	7
III. 주주	7
1. 주주의 권리	7
2. 주주의 공평한 대우	14
IV. 이사회	18
1. 이사회 기능	18
2. 이사회 구성	21
3. 사외이사의 책임	26
4. 사외이사 활동의 평가	29
5. 이사회 운영	29
6. 이사회 내 위원회	32
V. 감사기구	35
1. 내부 감사기구	35
2. 외부감사인	40
VI.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41
1. 계열회사의 현황	41
2. 준법경영	42

3. 소비자중심경영.....	43
VII.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44
[첨부] 관련 규정.....	45
(1) 정관.....	45
(2) 이사회 규정.....	60
(3) 감사위원회 규정.....	65
(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70
(5) 평가보상위원회 규정.....	73

I. 기업의 개요

▶ 기업명 : 동아에스티 주식회사

▶ 작성담당자 : (정) 재경팀 박태상 차장

(부) 재경팀 유지우 대리

▶ 작성기준일 : 2018.12.31

▶ 기업개요 (기업집단 : 동아쏘시오그룹 / 지주회사 : 동아쏘시오홀딩스㈜)

업종		자산규모(연결기준)			상장시장			기업집단 소속 (공정거래법상)	
비금융	금융	5 천억 미만	2 조 미만	2 조 이상	코스피	코스닥	비상장	해당	비해당
√			√		√			동아쏘시오	

Ⅱ. 기업지배구조 일반

1.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당사는 주주 가치 제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투명한 정보공개, 내부 의사결정주체의 독립성, 이사회 내 견제와 균형을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지배구조를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홈페이지(<http://www.donga-st.com>) 및 DART(<http://dart.fss.or.kr>) 등 공시조회시스템을 통해 정관, 이사회 규정, 주주에 관한 사항, 이사회 및 감사기구에 관한 사항 등 지배구조 관련 내용을 공개하여 당사 지배구조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부 의사결정주체인 이사회가 합리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외이사가 과반이 되도록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사회 의장을 대표이사와 분리하여 사외이사가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 위원회인 평가보상위원회와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하여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구성원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안정적이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구현하고, 회사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당면하는 현안을 이사회가 효과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영전반(김근수 이사), 법률(우병창 이사), 제약R&D(류재상 이사), 보건의료행정(최희주 이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8년 말 기준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의 기업으로 상법상 감사위원회의 설치 의무가 없지만, 기업경영 및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근감사제도를 대신하여 감사위원회를, 2017년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외이사 선임을 위해서 사외이사가 과반으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당사는 위와 같은 제도와 장치를 통해 이사회·경영진·사외이사 모두가 상호견제와 균형을 가능하도록 하는 동시에 최적화된 경영 의사결정이 가능한 기업 지배구조를 갖추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동아쏘시오홀딩스(주) 강정석 회장이며,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24.0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

성명	관계	주식의 종류	주식수	지분율	비고
강정석	최대주주	보통주	28,210	0.33	
이동훈	발행회사 임원	보통주	1,006	0.01	
이주섭	발행회사 임원	보통주	962	0.01	
신유석	발행회사 임원	보통주	1,144	0.01	
정수환	발행회사 임원	보통주	12	0.00	
박성근	계열회사 임원	보통주	190	0.00	
김민영	계열회사 임원	보통주	598	0.01	
동아쏘시오홀딩스	계열회사	보통주	1,926,322	22.81	
상주학원	재단	보통주	29,754	0.35	
수석문화재단	재단	보통주	45,338	0.54	
합계			2,033,536	24.08	

3. 지배구조 특징

(1)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당사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사외이사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회 총원 7명 중 사외이사는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전체 구성원 대비 약 57%), 2018년 이후부터 이사회 의장직은 대표이사직과 분리하여 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선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우병창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 내 위원회 중심의 운영

당사는 이사회의 전문성과 능률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이사회 내 위원회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회 산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 등 총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가보상위원회와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하여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상시적으로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 후보 추천을 수행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업무 및 회계감사, 외부감사인 선임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평가보상위원회는 임원 성과평가 및 보상에 관한 기준을 수립하고, 경영진의 개별 성과를 평가하여 보상 수준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8년 말 기준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의 기업으로 상법상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 의무가 없지만, 주주가치 및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자발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3) 사외이사의 전문성 및 다양성

당사는 경영 전반(김근수 이사), 법률(우병창 이사), 제약R&D(류재상 이사), 보건의료행정(최희주 이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경영진을 감독·견제하는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당사의 다양한 사외이사 구성은 일반적인 경영 및 법률 전문가뿐만 아니라 사업적 특성에 맞는 제약R&D 및 보건의료행정 전문가를 포함하고 있어 이사회에서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의안심의를 가능하게 합니다.

4. 지배구조 현황

기관	구성 (사외이사수/ 구성원수)	의장(대표자) (사내외이사여부)	주요심의내용
이사회	4/7	우병창 (사외이사)	· 주주총회의 소집 및 재무제표승인 등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회사 경영에 관한 기본방침 및 신규사업의 추진 · 대표이사의 선임, 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 선임 등에 관한 사항 · 신주 및 사채의 발행, 배당 결정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위원회	3/3	김근수 (사외이사)	· 회사 및 자회사의 업무·재산 조사에 관한 사항 · 감사보고서 작성·제출 및 분·반기 회계결산 승인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 평가 · 외부감사인 선임, 변경 및 해임에 대한 승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3	류재상 (사외이사)	·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 추천
평가보상위원회	3/3	최희주 (사외이사)	· 임원 성과평가기준 및 보상기준 수립 · 회사 및 대표이사의 성과목표 승인 · 회사 및 대표이사의 성과평가

Ⅲ. 주주

1. 주주의 권리

(핵심원칙 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세부원칙 1-①)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하고,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주주총회 개최 관련

당사는 주주들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의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최근 3년간 주주총회일의 3주전 까지 주총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법에 의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의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는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주주에게 소집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주주의 적법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근 3년간 주주총회 개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3년간 주주총회 개최 현황]

구분	제6기 주주총회	제5기 주주총회	제4기 주주총회
소집결의일	2019.02.28(목) (주총 29일 전)	2018.02.28(수) (주총 27일 전)	2017.03.02(목) (주총 22일 전)
공고일	2019.03.14(목) (주총 15일 전)	2018.03.12(월) (주총 15일 전)	2017.03.09(목) (주총 15일 전)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소집통지서 발송, 금융감독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 공지		
외국인주주통지법	자사 홈페이지에 영문으로 주주총회 개최 관련사항 공지, 주요주주에게 영문 소집통지서 우편 발송	주요주주에게 영문 소집통지서 우편 발송	
개최일시	2019.03.29(금) 오전 10시	2018.03.27(화) 오전 8시 30분	2017.03.24(금) 오전 8시 30분
주주총회 집중일 해당여부	○	X	N/A
주총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 참여여부	X	○	N/A
개최장소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14길 18 동아ST(주) 신관 7층 대강당		
이사회 구성원 출석여부	7명 전원출석	7명 전원 출석	총 8명 중 4명 출석
주주발언 주요내용	발언주주 없음	1) 발언주주 : 1인 (개인투자자 : 1인)	1) 발언주주 : 3인 (개인투자자 : 3인)

		2) 주요발언요지 : 의사진행방식 건의	2) 주요발언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
--	--	--------------------------	-----------------------------

(2) 주주총회 결의 및 의결권행사 관련 등

제6기 정기주주총회는 상정 안건 모두 원안대로 승인되었으며, 직접 참여 및 의결권 대리행사,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에 의한 방식으로 의결권이 행사되었습니다. 출석한 주주는 위임장 제출을 포함하여 239명이며, 출석주식수는 5,823,697주입니다. 이는 의결권 있는 주식수의 69.01%에 해당합니다. 당사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주주에게도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주총회 종료 직후 결과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제5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제도를 도입하여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참고서류를 공시하여 모든 주주들에게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주주총회 운영의 효율성 및 비용 절감을 위해 서면투표제는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최근 2년간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별 세부 찬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기 정기주주총회 안건별 찬반 내역]

(단위 : 주)

안건	결의 구분	회의 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 수(①)	① 중 의결 권 행사 주 식수	찬성
						주식수
						주식수
제1호 의안	보통	제6기(2018.01.01~2018.12.31) 재무제표(결손금처리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8,438,390	5,823,697	5,694,049 (97.77%)
						129,648 (2.23%)
제2호 의안	특별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결	8,438,390	5,823,697	5,790,434 (99.43%)
						33,263 (0.57%)
제3호 의안	보통	임원퇴직금규정 일부 변경의 건	가결	8,438,390	5,823,697	4,533,675 (77.85%)
						1,290,022 (22.15%)
제4호 의안	보통	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후보자 김근수)	가결	8,438,390	5,823,697	4,668,237 (80.16%)
						1,155,460 (19.84%)

제5호 의안	보통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후보자 김근수)	가결	5,303,846	2,689,153	2,387,129 (88.77%)
						302,024 (11.23%)
제6호 의안	보통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8,438,390	5,823,697	4,713,518 (80.94%)
						1,110,179 (19.06%)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3% 초과 의결권 제한

[제5기 정기주주총회 안건별 찬반 내역]

(단위 : 주)

안건	결의 구분	회의 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①)	①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찬성
						주식수
						반대·기권
						주식수
제1호 의안	보통	제5기(2017.01.01~2017.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8,438,390	4,618,860	4,590,599 (99.39%)
						28,261 (0.61%)
제2-1호 의안	특별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조문 정비의 건)	가결	8,438,390	4,618,860	4,618,506 (9.99%)
						354 (0.01%)
제2-2호 의안	특별	이사 수 상한 축소의 건	가결	8,438,390	4,618,860	4,618,561 (99.99%)
						299 (0.01%)
제2-3호 의안	특별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감사위원회 도입의 건)	가결	8,438,390	4,618,860	4,618,486 (99.99%)
						374 (0.01%)
제2-4호 의안	특별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대표이사과 이사회 의장 분리의 건)	가결	8,438,390	4,618,860	4,618,490 (99.99%)
						370 (0.01%)
제2-5호 의안	특별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회 소집권자 변경의 건)	가결	8,438,390	4,618,860	4,618,486 (99.99%)
						374 (0.01%)

제2-6호 의안	특별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회 내 위원회 확대의 건)	가결	8,438,390	4,618,860	4,618,486 (99.99%)
						374 (0.01%)
제2-7호 의안	특별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분기배당 도입의 건)	가결	8,438,390	4,618,860	4,618,580 (99.99%)
						280 (0.01%)
제2-8호 의안	특별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부칙 신설의 건)	가결	8,438,390	4,618,860	4,618,556 (99.99%)
						304 (0.01%)
제3-1호 의안	보통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후보자 엄대식)	가결	8,438,390	4,618,860	3,753,335 (81.26%)
						865,525 (18.74%)
제3-2호 의안	보통	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후보자 류재상)	가결	8,438,390	4,618,860	4,618,457 (99.99%)
						403 (0.01%)
제3-3호 의안	보통	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후보자 최희주)	가결	8,438,390	4,618,860	4,618,386 (99.99%)
						474 (0.01%)
제4-1호 의안	보통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후보자 우병창)	가결	5,584,471	2,205,790	1,924,223 (87.24%)
						281,567 (12.76%)
제4-2호 의안	보통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후보자 김근수)	가결	5,584,471	2,205,790	1,952,200 (88.50%)
						253,590 (11.50%)
제4-3호 의안	보통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후보자 최희주)	가결	5,584,471	2,205,790	2,205,351 (99.98%)
						439 (0.02%)
제5호 의안	보통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8,438,390	4,618,860	3,752,672 (81.25%)
						866,188 (18.75%)
제6호 의안	보통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8,438,390	4,618,860	4,610,927 (99.83%)

								7,933 (0.17%)
--	--	--	--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3% 초과 의결권 제한

[제6기 정기주주총회 안건별 세부 찬반 현황]

(단위 : 주)

안건	결의 구분	주주총회 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찬성 주식수	반대 주식수	기권 주식수	출석수 대비 찬성율
제1호 의안	보통	제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8,438,390	5,694,049	123,555	6,093	97.77%
제2호 의안	특별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결	8,438,390	5,790,434	33,246	17	99.43%
제3호 의안	보통	임원퇴직금규정 일부 변경의 건	가결	8,438,390	4,533,675	1,285,464	4,558	77.85%
제4호 의안	보통	이사선임의 건(사외이사 김근수)	가결	8,438,390	4,668,237	1,155,234	226	80.16%
제5호 의안	보통	감사위원선임의 건(김근수 사외이사)	가결	5,303,846	2,387,129	301,798	226	88.77%
제6호 의안	보통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8,438,390	4,713,518	1,109,948	231	80.94%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3% 초과 의결권 제한

(세부원칙 1-②)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사는 상법 제363조의2 및 제542조의6에 명시된 주주제안권 행사 절차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주가 주주총회에 의안을 제안할 경우 회사는 상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권리행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시 제안주주에게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2)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직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제안내역은 없으며, 상기 주주제안 절차에 대한 회사 내부 기준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주제안 내역]

제안 일자	제안 주체	주요 내용	처리 및 이행상황	가결여부	찬성률 (%)	반대율 (%)
-------	-------	-------	-----------	------	---------	---------

해 당 사 항 없 음

(세부원칙 1-③) 기업은 배당정책 및 향후 배당계획 등에 대한 정보를 주주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관련 정책에 근거하여 결정되는 적절한 수준의 배당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1) 당사는 정관 제45조에 따라 금전과 주식 등으로 이익의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제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3월, 6월 및 9월말을 기준일로 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해 금전으로 분기배당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변경하였습니다.

(2) 당사는 주주중심의 경영을 실현하고자 매년 지속적으로 배당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당기에도 정부의 규제강화 및 제약사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힘든 경영상황 속에서도 현금배당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제5기(2017년 사업연도)에는 당기순손실 발생에도 불구하고 내부 유보자금을 활용하여 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미래의 성장동력확보를 위한 내부유보와 이익의 주주환원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배당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근 3년간 차등배당·분기배당 및 중간배당은 실시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배당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년간 배당 내역]

사업연도	결산월	주식종류	주식배당	현금배당					
				액면가	주당배당금	총 배당금	시가배당률	배당성향	
								연결기준	별도기준
2018	12	보통주	-	5,000	1,000	8,438,390,000	0.9	105.4	48.1
		종류주	-	-	-	-	-		
2017	12	보통주	-	5,000	500	4,219,695,000	0.5	-	-
		종류주	-	-	-	-	-		
2016	12	보통주	-	5,000	500	4,219,695,000	0.6	39.7	32.7
		종류주	-	-	-	-	-		

주1) 상기 시가배당률은 당해 배당과 관련된 주주명부폐쇄일 2매매거래일 전부터 과거 1주일 간의 거래소 시장에서 형성된 최종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1주당 배당금의 백분율임

주2) 2017 사업연도의 연결 및 개별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배당성향 측정 불가능

2. 주주의 공평한 대우

(핵심원칙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세부원칙 2-①)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주식발행 현황

당사가 발행 가능한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이 있으며, 우선주식의 경우 무의결권 배당우선 주식으로 우선주 발행 시 상환권, 전환권, 상환전환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30,000,000주이며, 그 중 우선주식의 발행한도는 3,000,000주입니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 당사의 총 발행주식수는 보통주 8,443,868주입니다.

참고로 현재 당사는 종류주식을 발행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3년간 별도로 개최된 종류주주총회 또한 없습니다.

[주식발행 현황]

(기준일 : 2018.12.31, 단위 : 주)

구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	우선주	합계	
I. 발행할 주식의 총수	30,000,000	3,000,000	30,000,000	-
II.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8,443,868	700,348	9,144,216	-
III.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700,348	700,348	-
1. 감자	-	-	-	-
2. 이익소각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4. 기타	-	700,348	700,348	전환권 행사
IV. 발행주식의 총수 (II-III)	8,443,868	-	8,443,868	-
V. 자기주식수	5,478	-	5,478	-
VI. 유통주식수 (IV-V)	8,438,390	-	8,438,390	-

(2) IR 개최 현황

당사는 기업의 투명성 확보 및 기업가치 극대화, 투자자와의 신뢰형성을 위해 다양한 IR 활동을 정기적, 수시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 분기 영업잠정실적을 공시한 이후 애널리스트 대상 실적발표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

고 있습니다. 영업잠정실적 공시 후 분기 IR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실적발표회를 진행하는 등 투명하고 공평한 정보공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적발표 전 2주간은 IR활동 중단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NDR(Non Deal Roadshow)을 실시하고 있으며, 증권사가 개최하는 국내외 Conference나 Corporate Day에 참가하여 적극적으로 IR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해외투자자를 위해 매년 영문으로 Annual Report를 제작하여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영문공시 내역은 없습니다.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실적발표 6회, 국내 NDR 7회, Corporate Day 2회를 진행하였으며, 이외에도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탐방미팅을 총 127회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IR담당부서의 연락처를 공개하고 있지는 않으나, 외부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주요 IR 활동 현황]

일자	대상	형식	주요 내용
2018.02.07	애널리스트	컨퍼런스콜	2017년 연간 및 4분기 실적발표 및 주요 R&D 현황
2018.02.08 ~2018.02.09	국내 기관투자자	NDR	2017년 연간 및 4분기 실적발표 및 주요 R&D 현황
2018.04.02	국내외 기관투자자	Corporate Day	기업소개 및 주요 R&D 현황
2018.05.09	애널리스트	컨퍼런스콜	2018년 1분기 실적발표 및 주요 R&D 현황
2018.05.10 ~2018.05.11	국내 기관투자자	NDR	2018년 1분기 실적발표 및 주요 R&D 현황
2018.07.27	애널리스트	컨퍼런스콜	2018년 2분기 실적발표 및 주요 R&D 현황
2018.07.30 ~2018.07.31	국내 기관투자자	NDR	2018년 2분기 실적발표 및 주요 R&D 현황
2018.10.12	국민연금	NDR	기업소개 및 주요 R&D 현황
2018.10.30	애널리스트	컨퍼런스콜	2018년 3분기 실적발표 및 주요 R&D 현황
2018.10.31 ~2018.11.01	국내 기관투자자	NDR	2018년 3분기 실적발표 및 주요 R&D 현황
2018.11.20	국내외 기관투자자	Corporate Day	기업소개 및 주요 R&D 현황

2019.02.13	애널리스트	컨퍼런스콜	2018년 연간 및 4분기 실적발표 및 주요 R&D 현황
2019.02.13 ~2019.02.15	국내 기관투자자	NDR	2018년 연간 및 4분기 실적발표 및 주요 R&D 현황
2019.04.04	국내외 기관투자자	Corporate Day	기업소개 및 주요 R&D 현황
2019.05.03	애널리스트	컨퍼런스콜	2019년 1분기 실적발표 및 주요 R&D 현황
2019.05.07 ~2019.05.08	국내 기관투자자	NDR	2019년 1분기 실적발표 및 주요 R&D 현황

(3) 기업정보 공개 현황

당사에 관련된 정보는 당사의 국/영문 홈페이지 (국문 <http://www.donga-st.com>, 영문 <http://en.donga-st.com>) 및 DART(<http://dart.fss.or.kr>), KIND(<http://kind.krx.co.kr>) 등 공시조회시스템을 통해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외 투자자를 위해 매년 영문 Annual Report를 발간하고 있으며, 당사 국/영문 홈페이지에 Annual Report와 정기 IR자료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상기 두 자료에 당사 IR 담당 부서의 이메일 주소와 연락처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홈페이지 내 투자정보 섹션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으며, 해당 섹션에는 정관, 이사회 규정, 주식분포 상황, 이사회 및 감사기구에 관한 사항 및 당사의 재무현황 등의 자료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URL은 다음과 같습니다.

· <http://www.donga-st.com/Pass.da?viewPath=/b05/association>

당사는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 바 없으며, 시장참가자들 간에 정보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정공시 정보를 한국거래소의 KIND 시스템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정공시 내역]

공시일자	공시제목	주요 내용
2018.02.07	영업(잠정)실적 공정공시	2017년 연간 및 4분기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잠정실적
2018.05.09	영업(잠정)실적 공정공시	2018년 1분기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잠정실적
2018.07.27	영업(잠정)실적 공정공시	2018년 2분기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잠정실적
2018.10.30	영업(잠정)실적 공정공시	2018년 3분기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잠정실적
2019.02.13	영업(잠정)실적 공정공시	2018년 연간 및 4분기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잠정실적

2019.02.28	[기재정정]영업(잠정)실적 공정공시	2018년 연간 및 4분기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잠정실적 기재정정
2019.05.03	영업(잠정)실적 공정공시	2019년 1분기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잠정실적

(세부원칙 2-②)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1)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행하지 않도록 이사회 규정 제12조에 따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사, 관계사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시 결의요건을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으로 결의요건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2) 최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 공여

가. 담보제공내역

당사는 보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최대주주 등에 대한 담보제공내역이 없습니다.

나. 채무보증내역

당사는 보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채무보증내역이 없습니다.

다. 자금보충약정

당사의 특수관계자인 동아쏘시오홀딩스(주)는 (주)인더스파크가 미래에셋대우(주)의 특수목적기업인 엠에스당진제일차(주)와 체결한 380억원 한도의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대출원리금 상환부족액에 대한 자금보충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사는 이에 대해 동아쏘시오홀딩스(주)와 공동으로 자금보충약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엠에스당진제일차(주)에 백지어음 1매를 건질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동 차입금의 미상환잔액은 340억원입니다.

(3)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구분	특수관계자명	수입		지출					
		매출	기타수익	상품 및 원재료매입	기타비용	용역비	유·무형자산 취득	배당금 지급	지분 취득
최대주주	동아쏘시오 홀딩스(주)	3,673,993	-	-	14,399,047	8,138,147	-	943,251	-
종속기업	Dong-A America Corp	619,601	-	-	81,232	-	-	-	-
	Dong-A Brasil Farmaceutica Ltda	30,879	-	-	370,709	-	-	-	-

구분	특수관계자명	수입		지출					
		매출	기타수익	상품 및 원재료매입	기타비용	용역비	유·무 형자산 취득	배당금 지급	지분 취득
관계기업	Neurobo Pharmaceuticals, Inc.	17,368,353	-	-	-	-	-	-	-
기타 계열 회사	동아제약(주)	7,696,475	-	5,285,423	1,618,472	-	-	-	-
	동아오츠카(주)	260,463	-	49,365,810	130,868	-	-	-	-
	용마로지스(주)	97,690	-	-	-	12,965,801	-	-	-
	DA 인포메이션 (주)	101,058	-	-	515,169	3,481,884	-	-	-
	에스티팜(주)	4,303	-	23,230,402	197,211	-	-	-	-
	(주)철근종합건설	4,815	-	-	1,788,691	-	-	-	-
	(주)수석	-	-	709,903	170,128	-	-	-	-
	디엠바이오(주)	109,912	-	-	3,351,226	-	-	-	-
	PT Combiphar Dong-A Indonesia	751,197	33,465	-	-	-	-	-	644,683
합 계	30,718,739	33,465	78,591,538	22,622,753	24,585,832	-	943,251	644,683	

IV. 이사회

1. 이사회 기능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세부원칙 3-①)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

당사 이사회는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진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의하고,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사회 규정 제17조를 바탕으로 이사회에 직무집

행감독권을 부여하였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할 염려가 있을 경우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16조 및 제20조에 의거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이사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인력의 지원 또는 자문,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매 분기 개최되는 정기이사회뿐 아니라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시 수시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 구체적인 역할 등은 정관 제5장 및 이사회 규정 제13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승인 사항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주총회의 소집 · 영업보고서의 승인 · 재무제표의 승인 · 정관의 변경 · 자본의 감소 · 현금, 주식, 현물배당 결정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등 			
경영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 신규사업의 추진 ·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공동대표의 결정 ·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재무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주의 발행 ·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소각 등 · 중요한 재무에 관한 사항 			
		구분	기준	
		시설투자	자기자본	100분의 10 이상
		출자 또는 출자 지분의 처분		100분의 5 이상
		단기자금의 차입		100분의 10 이상
		담보제공, 채무보증, 채무인수, 채무면제		100분의 5 이상
		선급금 지급, 금전 및 증권의 대여, 가지급 결정		100분의 5 이상
		단일판매 또는 공급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	매출액	100분의 5 이상
	유형자산의 취득 및 처분	자산총액	100분의 5 이상	
이사 등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 타회사의 임원 겸임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한 소송의 제기 · 준법지원인의 임면, 준법통제기준 제정 및 개정 신설 등 			

(2) 이사회 권한 위임 관련

이사회는 정관 제 39 조의 2 및 이사회 규정 제 13 조의 2 규정에 의거 이사회 권한을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3-②)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과 내부통제정책(리스크 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1)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관련

당사는 현재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최고경영자 승계를 위한 후보군 발굴, 승계 후보자 양성 및 평가와 같은 승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최고경영자 후보군 발굴·육성과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을 위하여 임원 성과평가 및 역량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에 대한 평가주체는 평가보상위원회이며, 대표이사를 제외한 기타 임원에 대한 평가는 평가보상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는 임원 인사 및 보상금 지급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원 평가보상체계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평가보상위원회에서 매년 보완 및 개선하고 있습니다. 향후 좀 더 명확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수립하고, 이사회 중심으로 승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 내부통제정책 전반 관련

당사는 이사회와 그 산하에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감사실 및 CP관리실을 내부감사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은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감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 정기감사 및 필요한 경우 수시감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공인회계사, 공인내부감사사 등 기업 내부감사에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인원들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CP관리실은 제약업종에 특화된 리스크 및 준법경영에 대처하기 위하여 영업부서의 공정경쟁 및 반부패 준법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반부패 및 Compliance 관련 내부 기준 제정 및 국제인증업무를 수행하고, 감사위원회에 운영현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내부회계관리를 위하여 내부회계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회계업무의 처리, 점검 및 회계기록의 관리 등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 책임자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 회계연도 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이사회, 감사위원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3) 공시관련 조직현황 및 공시관리 시스템 현황

당사는 경영관리본부장이 공시책임자를 맡고 있으며, 경영관리본부 산하에 공시 담당자 정/부를 지정하여 공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 공시담당자는 의무교육 시간을 매년 이수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의 공시관련 교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의 임직원 자사주거래 알림 서비스(K-ITAS)를 신청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원의 자사주거래에 대한 내부통제를 통해 내부자거래, 단기매매차익거래 및 지분보고위반을 사전에 예방하여 투자자 신뢰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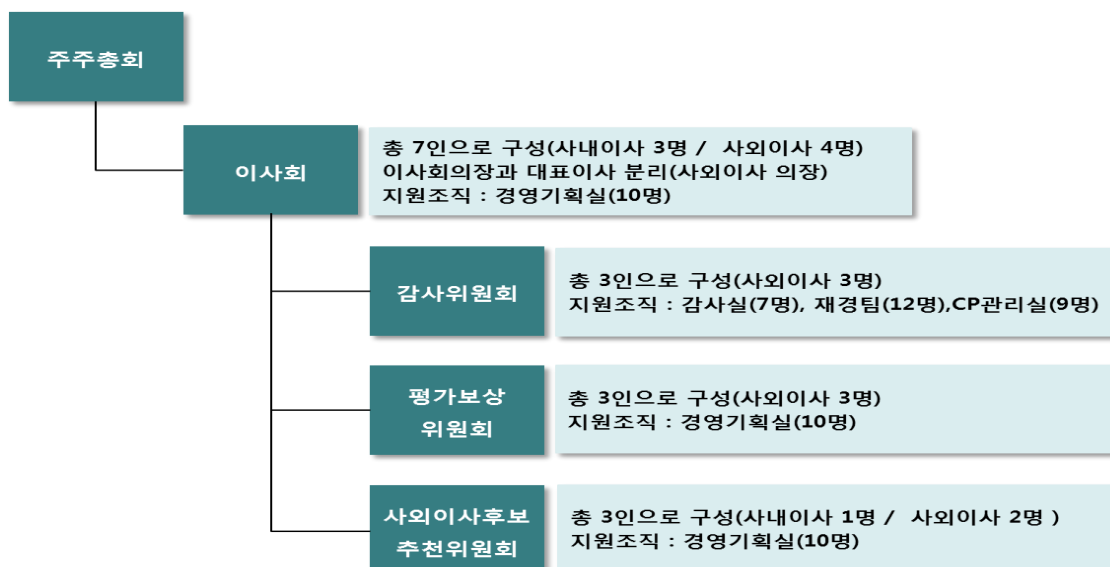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4-①)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1) 이사회 구성 관련

당사 이사회는 정관상 3명 이상 7명 이하의 이사로 구성됩니다. 최소 인원을 3명으로 규정한 것은 상법 제38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최소 이사회 총원을 반영한 것이며, 최대 7명으로 제한한 이유는 당사 규모를 고려하여 운영의 효율성 및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이사회 관련 조직도]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총 7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3년입니다. 또한 사외이사가 과반이 되도록 이사회를 구성하고 대표이사와 이사회회장을 분리함으로써 이사회가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실질적인 독립성을 유지하고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사의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회 구성 현황]

구분	성명	직책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연임 여부	전문분야 및 주요경력
사내	엄대식	대표이사	2018.03.27	2021.03.27	-	경영총괄 한국오츠카 대표이사
사내	이동훈	부사장	2017.03.24	2020.03.24	-	글로벌사업부문 담당 동아쏘시오홀딩스(주) 대표이사 부사장
사내	윤태영	연구본부장	2017.03.24	2020.03.24	-	R&D 부문 담당 동아에스티(주) 혁신신약연구소장
사외	우병창	이사회회장	2017.03.24	2020.03.24	재임 (1회)	법률분야 전문가 (現)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사외	김근수	-	2013.03.02	2022.03.29	재임 (2회)	재무분야 전문가 (現) 경희대 국제대학원 국제경영학과 교수
사외	류재상	-	2018.03.27	2021.03.27	-	약학분야 전문가 (現) 이화여대 약학대학 학과장
사외	최희주	-	2018.03.27	2021.03.27	-	보건복지행정 및 관계법률 전문가 (現) 법무법인 율촌 고문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현황]

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설치목적 및 주요 역할
	직책	구분	성명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	류재상	- 설치목적 : 사외이사 후보 추천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 - 주요역할 : 정기주주총회 상정의안으로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위원	사외이사	우병창	
	위원	사내이사	엄대식	
감사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	김근수	- 설치목적 : 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 주요역할 : 이사의 업무 감독, 자회사 감사 및 외부감사인 선정 등
	위원	사외이사	우병창	
	위원	사외이사	최희주	
평가보상 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	최희주	- 설치목적 : 임원 보수 결정과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 - 주요역할 : 경영진 평가, 보상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심의
	위원	사외이사	김근수	
	위원	사외이사	류재상	

(세부원칙 4-②)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당사는 회사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당면하는 현안을 이사회가 효과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자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경영전반 및 제약산업에 경험(엄대식 이사), 글로벌사업부문 경험 및 재무회계 전문가(이동훈 이사), 연구개발부문의 경험 및 전문지식(윤태영 이사)를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하여 재무(김근수 이사), 법률(우병창 이사), 제약R&D(류재상 이사), 보건의료행정(최희주 이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당사의 이사회 구성은 일반적인 경영 및 법률 전문가뿐만 아니라 사업적 특성에 맞는 제약R&D 및 보건의료행정 전문가를 포함하고 있어 심도 있는 이사회 의안심의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2017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구분	성명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변동일	변동사유	현재 재직 여부
사내이사	안병옥	2014.03.21	2017.03.24	2017.03.24	임기만료	퇴직
	강수형	2016.03.18	2018.03.27	2018.03.27	임기만료	퇴직
	김학경	2016.03.18	2018.03.27	2017.03.24	사임	퇴직
	민장성	2017.03.24	2020.03.24	2018.03.27	사임	퇴직
	이동훈	2017.03.24	2020.03.24	2017.03.24	선임	재직
	윤태영	2017.03.24	2020.03.24	2017.03.24	선임	재직
	엄대식	2018.03.27	2021.03.27	2018.03.27	선임	재직
사외이사	최희주	2018.03.27	2021.03.27	2018.03.27	선임	재직
	류재상	2018.03.27	2021.03.27	2018.03.27	선임	재직
비상무이사	강정석	2013.03.04	2019.03.18	2017.08.29	사임	퇴직

(세부원칙 4-③)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선임할 이사 후보자 중 사내이사는 이사회에서,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집중투표제는 도입하고 있지 않으나, 주주는 상법에 근거하여 주주제안권 행사를 통해 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2명(사외이사 비율 : 66.7%)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 후보 추천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총회에 이사 선임 안건이 포함될 경우, 모든 주주에게 우편으로 발송되는 소집통지서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안건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각 이사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과거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 내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정보 제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총회 시 이사 후보자 정보제공 현황]

정보제공일	주주총회일	이사 후보		정보제공 내역
		구분	성명	
2019.03.14 (주총 16 일 전)	2019.03.29	사외이사	김근수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2. 추천인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2018.03.14 (주총 14 일 전)	2018.03.27	사내이사	엄대식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2. 추천인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사외이사	류재상	
		사외이사	최희주	

(세부원칙 4-④)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아야 한다.

당사의 현재 임원 중 과거 횡령, 배임 판결을 받은 자는 없으며, 당사는 집행임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2019년 3월 말 기준 임원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등기/미등기 임원 현황]

성명	성별	직위	등기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재직기간
엄대식	남	대표이사 회장	등기임원	상근	CEO	'87 서울대 농과대 졸업 '96 한국오츠카제약 사장	3
이동훈	남	부사장	등기임원	상근	해외	'95 오하이오주립대 경영학(석사) '12 삼성 KPMG 투자자문 전문이사	6
윤태영	남	전문이사	등기임원	상근	연구	'94 Yale 대 화학(박사) '13 혁신신약연구소장	6

성명	성별	직위	등기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재직기간
김근수	남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감사위원	'00 뉴욕주립대 박사 '05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6
우병창	남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	'96 고려대 법과대 박사 '11 한일법학회 총무이사	5
최희주	남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	'08 가천대 보건학(박사) '12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1
류재상	남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이사	'03 Northwestern 대 화학(박사) '17 이화여자대학교 약학과장	1
이주섭	남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생산	'86 성균관대 기계공학 석사 '14 동아제약 생산본부장 겸 천안공장장	30
소순종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사무	'95 서울대 경영학과 '14 CP 관리실장	5
함태인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영업	'86 단국대 전자공학학 학사 '15 의료기기사업부장	4
임원빈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연구	'89 서강대 화학(석사) '15 신약연구소장	29
신유석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영업	'99 서울대 약학(석사) '18 영업본부장	8
이성근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CFO	'96 서강대학교 경영학 '18 경영관리본부장	6
문기호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마케팅	'91 성균관대 약학(석사) '18 학술의학실장	0
박경준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감사	'02 고려대 경영학과(석사) '11 삼정회계법인	3
박희범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개발	'93 충북대학교 약학(석사) '17 개발본부장	24
박인수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해외	'93 경희대학교 화학 '16 해외사업부장	26
변배문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영업	'88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 '18 치료약사업부장	30
허성욱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사무	'90 한양대학교 생물학 '14 약무실장	28
이전평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생산	'12 충남대학교 제약학(석사) '15 제제생산실장	25
정경운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사무	'06 New York University MBA(석사) '17 경영기획실장	3
김형현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법무	'04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법학전문대학원 '18 법무실장	7

성명	성별	직위	등기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재직기간
전철수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개발	'95 영남대학교 생물의약학(석사) '18 개발기획실장	24
조규홍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영업	'95 우석대학교 경영학 '18 의료사업정책실장	24
우광욱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영업	'89 단국대학교 무역학 '15 서울 4 지점장	30
김형국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영업	'91 목원대학교 무역학 '15 서울 3 지점장	27
김현선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영업	'86 중앙대학교 경제학 '15 서울 1 지점장	30
양호준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생산	'12 영남대학교 약학(박사) '15 달성공장장	25
강경구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연구	'14 아주대학교 임상약학(박사) '18 의약품개발연구실장	26
양승민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연구	'04 Yale 대 화학(박사) '17 기반기술연구실장	6
장선우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연구	'07 성균관대 제약학(박사) '17 제품개발연구소장	21
양재성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연구	'10 경희대 화학(박사) '16 신약연구소 신약연구 2 팀장	25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미등기 임원 선임 시 과거 성과평가 및 역량평가 결과, 징계기록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 사외이사의 책임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 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세부원칙 5-①)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외이사 선임을 위하여 상법에서 요구하는 이사 자격요건뿐만 아니라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성, 충실성 등의 자격요건 및 이해관계 여부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당사에 적임인 인물을 사외이사 최종 후보자로 확정하고, 주주총회 안건으

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추천된 사외이사 후보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 선임됩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모든 사외이사는 당사에 재직할 경험이 없으며, 당사 또한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거래한 내역이 없습니다.

[사외이사의 과거 재직여부 및 거래내역 현황]

성명	과거 재직여부		최근 3개 사업연도 거래내역	
	동아에스티	계열회사	동아에스티	계열회사
김근수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우병창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최희주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류재상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당사는 사외이사 임기 만료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적격성 평가(전문성, 직무 공정성, 충실성, 결격요건)를 통하여 재선임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와 회사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장 9년으로 사외이사 임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구체적인 재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외이사의 재직기간 및 장기재직 시 사유]

성명	재직기간	6년초과 장기재직 사유
김근수	6년 3개월	1. 재무부문의 전문가로서 회사와 독립적인 지위에서 회사의 회계/재무 부분의 경영활동 감시역할 수행 2.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음
우병창	5년 2개월	-
최희주	1년 2개월	-
류재상	1년 2개월	-

(세부원칙 5-②)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1) 당사는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과 관련하여 내부 기준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 확인서에 사외이사 후보자 본인의 서명을 받으며 겸직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겸직에 관한 상법 제382조 및 제542조의8에 의거하여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 중 우병창 사외이사가 타기업의 감사 및 사외이사로 겸직하고 있으나,

각 1개의 직책에 불과하며 겸직 기간에도 당사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출석률이 약 100%로 이사회 활동에 충실하여 직무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법인 이사·집행임원·감사 겸직 현황]

성명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일	현직	겸직 현황			
				겸직기관	겸직업무	겸직기간	겸직기관 상장여부
김근수 (감사위원)	2013.03.04	2022.03.29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우병창 (감사위원)	2014.03.21	2020.03.21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주)금양	사외이사	2016.3.28 ~ 현재	상장
최희주 (감사위원)	2018.03.27	2021.03.27	법무법인 울촌 고문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류재상	2018.03.27	2021.03.27	이화여대 약학대학 교수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3) 당사는 각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전담부서를 지정하였으며, 사외이사의 원활한 이사회 활동 및 제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개최 전에 이사들이 해당 안건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최소 3일 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규정 제20조에 따라 임직원이나 외부전문인력의 지원 또는 자문 제공, 직무수행에 필요한 연수 실시, 사외이사만 참석하는 회의 개최 등 사외이사들이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4) 당사는 현재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만 참여하는 정기·임시 회의를 개최한 내역은 없지만, 통상 이사회 개최 전후 사외이사들이 모여서 주요 현안을 공유하는 미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차	정기/임시	개최일자	출석/전체 사외이사	회의 사항	비고
해 당 사 항 없 음					

4. 사외이사 활동의 평가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6-①)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보수는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투입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6-②) 사외이사의 평가결과는 보수 산정 및 재선임 결정 등에 반영되어야 한다.

당사는 사외이사 임기 만료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적격성 평가(전문성, 직무 공정성, 충실성, 결격요건)를 통하여 재선임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보수는 이사회 개최 빈도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선임 여부, 자료 검토 등 관련 업무 수행시간을 고려하여 연간 보수를 책정한 후, 월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은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이사회 운영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7-①)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당사 정관 제34조의3 및 이사회 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당사의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되며 정기이사회는 2월, 4월, 7월, 10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이사회는 긴급한 의안이 있을 때 개최됩니다.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 이외의 이사는 필요시 의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소집일 3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며,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만

일 이사가 이사회에 직접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이 허용되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당사의 구체적인 이사회 개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회차	종류	개최일자	안건 통지일자	출석/ 정원	안건		가결 여부
						구분	내용	
2018 년	1 차	임시	2018.01.15	2018.01.10	7/7	결의 사항	신규차입의 건 여신거래 제약정의 건	가결
	2 차	임시	2018.02.07	2018.02.02	7/7	결의 사항	제 5 기 결산서류 승인의 건	가결
	3 차	정기	2018.02.28	2018.02.22	6/7	보고 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보고 2018 년 경영계획 보고	보고
						결의 사항	제 5 기 결산서류 승인의 건(연결) 제 5 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도입의 건	가결
	4 차	임시	2018.03.08	2018.03.05	6/7	결의 사항	신규 차입의 건	가결
	5 차	임시	2018.03.27	2018.3.22	7/7	결의 사항	이사회위원장 선임의 건 대표이사 선임의 건	가결
	6 차	정기	2018.04.27	2018.04.24	7/7	결의 사항	이사회규정 개정의 건 감사위원회 규정 제정의 건 평가보상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결
						보고 사항	2018 년 1 분기 손익실적 보고 2018 년 2 분기 손익계획 보고	보고
	7 차	임시	2018.05.02	2018.04.26	7/7	결의 사항	차입금 연장의 건	가결
	8 차	임시	2018.05.31	2018.05.28	7/7	결의 사항	차입금 연장의 건	가결
9 차	정기	2018.07.27	2018.07.24	7/7	보고 사항	ISO37001 도입 경과 보고 독립준법자문인 활동내역 보고 2018 년 2 분기 손익실적 보고 2018 년 3 분기 손익 및 투자계획 보고	보고	
10 차	정기	2018.10.29	2018.10.24	7/7	보고 사항	2018 년 3 분기 손익실적 보고 2018 년 4 분기 운영계획 보고	보고	
					결의 사항	여신거래 갱신의 건	가결	

	11 차	임시	2018.11.23	2018.11.20	7/7	결의 사항	차입금 연장의 건	가결
2019 년	1 차	임시	2019.02.07	2019.01.30	7/7	결의 사항	제 6 기 결산서류 승인의 건 계열회사 자금보충 연장 승인의 건	가결
	2 차	정기	2019.02.28	2019.02.25	7/7	보고 사항	2018 년 경영실적 보고 대표이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실태 평가 보고	보고
						결의 사항	제 6 기 결산서류 승인의 건(연결) 제 6 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감사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가결
	3 차	정기	2019.04.19	2019.04.16	7/7	보고 사항	2019 년 1 분기 경영실적 보고 2019 년 2 분기 경영계획 보고	보고
						결의 사항	평가보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조합 차입형 우리사주제도 도입의 건 무보증 사모사채 발행 승인의 건	가결
4 차	임시	2019.05.10	2019.05.07	7/7	결의 사항	차입금 연장의 건 차입구조 개편의 건	가결	

(세부원칙 7-②)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당사는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전담부서에서 관리 및 영구보관하고 있습니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당사는 이사회의 독립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들의 개별 참석 및 찬반여부를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를 통해 매 분기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안건에 대한 개별 이사의 주요 토의내용을 이사회의사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 내역]

구분	연도	2018 년										2019 년				비고	
		회차	1 차	2 차	3 차	4 차	5 차	6 차	7 차	8 차	9 차	10 차	11 차	1 차	2 차		3 차
	개최일자	2018.01.15	2018.02.07	2018.02.28	2018.03.08	2018.03.27	2018.04.27	2018.05.02	2018.05.31	2018.07.27	2018.10.29	2018.11.23	2019.02.07	2019.02.28	2019.04.19	2019.05.10	
사내	임대식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1~4 차 미선임
	이동훈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윤태영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사외	김근수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우명창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최희주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1~4 차 미선임
	류재상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개별이사의 최근 3개연도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성명	구분	재직 기간	출석률(%)				찬성률(%)			
			재직평균	최근 3개년			재직평균	최근 3개년		
				2018	2017	2016		2018	2017	2016
엄대식	사외	2018.03.27 ~ 현재	100	100	-	-	100	100	-	-
이동훈	사내	2017.03.24 ~ 현재	100	100	100	-	100	100	100	-
윤태영	사내	2017.03.24 ~ 현재	100	100	100	-	100	100	100	-
김근수	사외	2013.03.04 ~ 현재	94	100	100	83	100	100	100	100
우병창	사외	2014.03.21 ~ 현재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최희주	사외	2018.03.27 ~ 현재	100	100	-	-	100	100	-	-
류재상	사외	2018.03.27 ~ 현재	100	100	-	-	100	100	-	-

※ 최근 3개년 중 해당 이사의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연도는 "-"으로 표시

6. 이사회 내 위원회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세부원칙 8-①)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세부원칙 8-②)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당사는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이사회 내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위원회 및 평가보상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도 사외이사의 비율이 과반수 입니다.

당사는 이사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회 산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 등 총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가보상위원회와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하여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당사는 2017년 9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도입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동 위원회 규정 제4조에 따라 총 3명의 위원 중 2명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장은 사외이사 중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사외이사의 자기권력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내이사 1명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포함시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자가 회사 및 주주 등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관련 법령 및 규범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고려하여 당사에 적합한 후보인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나) 평가보상위원회

당사는 2013년 7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평가보상위원회를 도입하였습니다. 평가보상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위원을 구성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보상제도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장은 사외이사 중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평가보상위원회는 임원의 성과평가 및 보상에 관한 기준을 수립하고, 그 기준에 따라 매년 회사 및 대표이사의 성과를 평가하여 보상하고 있습니다.

(다) 감사위원회

당사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인 상장회사로 상근감사제도를 운영해왔으나, 감사제도의 독립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2018년 3월 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통하여 감사위원회를 자발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회 및 경영진 등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사외이사 중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감사위원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결의하며, 이사와 경영진이 합리적으로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 규정 등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직무집행을 감독합니다.

각 위원회의 인원 구성 현황은 세부원칙 4-①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당사는 각각의 이사회 내 위원회 별로 위원회의 구성, 회의절차 및 부의안건 등 위원회 운

영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 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연도	회차	개최일자	출석/정원	안건		가결여부
				구분	내용	
2018년	1차	2018.02.21	3/3	결의사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 5기 정기주주총회 사외이사후보 추천의 건	가결
2019년	1차	2019.02.22	3/3	결의사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 6기 정기주주총회 사외이사후보 추천의 건	가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별이사 출석 현황]

성명	구분	재직	출석률(%)			
			재직평균	최근 3개년*		
				2018	2017	2016
엄대식	사내	2018.03.27 ~ 현재	100	100	-	-
김근수	사외	2013.03.04 ~ 현재	100	100	100	-
우병창	사외	2014.03.21 ~ 현재	100	100	100	-
류재상	사외	2018.03.27 ~ 현재	100	-	-	-

※ 당사는 2017.09.22 이사회결의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 류재상 사외이사는 2018.04.27 이사회에서 위원회로 신규 선임되었고, 우병창 사외이사는 2018.04.27까지 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평가보상위원회 개최 내역]

연도	회차	개최일자	출석/정원	안건		가결여부
				구분	내용	

2018 년	1 차	2018.03.08	3/3	결의 사항	2017 년 임원성과평가 및 보상 승인의 건 2018 년 임원성과평가 계획(안) 승인의 건	가결
2019 년	1 차	2019.02.22	3/3	결의 사항	위원장 선임의 건 2018 년 회사 및 대표이사 성과평가 및 임원 성과평가 보상(안) 승인의 건	가결
	2 차	2019.04.19	3/3	결의 사항	2019 년 회사 및 임원 성과평가 및 임원 성과평가 보상 계획(안) 승인	가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별이사 출석 현황]

성명	구분	재직	출석률(%)			
			재직평균	최근 3 개년*		
				2018	2017	2016
최희주	사외	2018.03.27 ~ 현재	100	100	-	-
김근수	사외	2013.03.04 ~ 현재	100	100	100	100
우병창	사외	2014.03.21 ~ 현재	100	100	100	100
류재상	사외	2018.03.27 ~ 현재	100	-	-	-

※ 류재상 사외이사는 2018.04.27 이사회에서 위원회로 신규 선임되었고, 우병창 사외이사는 2018.04.27까지 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3) 감사위원회 관련 사항은 본 보고서 다음 항목인 'IV. 감사기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V. 감사기구

1. 내부 감사기구

(핵심원칙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9-①)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15조의2, 제542조의11, 정관 제39조의3 및 감사위원회 규정 제5조에 따라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이어야 하며, 1명 이상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회 및 경영진 등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상기 요건을 상회하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김근수 위원이 맡고 있으며, 1명 이상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는 규정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의 구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위원회 구성 현황]

구성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비고
직책	구분	성명		
위원장	사외	김근수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재무 전공) 한국상장회사 감사회 정회원	2019.03.29 선임
위원	사외	우병창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국상장회사 감사회 정회원	2018.03.27 선임
위원	사외	최희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한국상장회사 감사회 정회원	2018.03.27 선임

(2) 당사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결의로 제정된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정에는 위원회의 직무와 권한, 감사위원의 의무, 위원회의 구성, 회의의 소집 등 운영 절차 및 부의안건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내/외 교육 및 외부전문가의 자문 등을 회사의 비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사회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감사위원회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결의하며 이사와 경영진이 합리적으로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준(감사위원회 규정)을 가지고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합니다.

(4) 감사위원회는 감사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회사 및 자회사의 모든 정보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영진 및 관계직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하거나 회사 내 감사조직의 감사업무에 대한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계와 관련된 거래처에 조사를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에 관계서류 및 장부, 증빙, 물품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자회사의 감사조직을 활용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부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부의사항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이사회 보고 및 중지청구 여부 · 영업보고의 요구 ·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감사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재산 조사에 관한 사항 · 자회사의 업무·재산 조사에 관한 사항 · 회사와 이사간의 소에 관한 사항 ·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 시 소 제기에 관한 사항 · 감사보고서 작성·제출 및 분·반기 회계결산 승인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 평가 · 외부감사인 선임, 변경 및 해임에 대한 승인 ·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에 관한 외부감사인의 보고 수령 ·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에 관한 외부감사인의 보고 수령

(5)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감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내부감사부서로서 감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은 당사 및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은 각 부서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은 1명의 임원과 6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원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보유하는 등 감사지원조직으로서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위	직책	감사업무기간	보유자격증
상무보	실장	39개월	한국공인회계사
차장	팀장	84개월	공인내부감사사
차장	팀원	75개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내부감사사
차장	팀원	29개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내부감사사
과장	팀원	26개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내부감사사

과장	팀원	7개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내부감사사
과장	팀원	8개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내부감사사

또한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인 회계 감사를 위하여 재경조직에서 매 분기 회계결산 결과, 회계검토 및 감사 시 주요 이슈사항을 보고하고 있으며, 매 분기 감사계획, 중점감사사항 및 내부 통제현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9-②)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1) 당사는 2018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통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감사위원회는 2018년에 3회, 2019년에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5회 개최되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매 분기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회계결산 및 회사 내부감사부서의 감사계획을 승인하고 감사실적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2018년 외감법 개정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정 주체가 기존 회사에서 독립된 내부감사기구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2018년 11월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에 필요한 평가기준을 승인하였습니다. 2019년 1월,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후보 회계법인으로부터 선임 제안서를 수령하여 검토 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결과표를 작성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삼일회계법인을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개정된 외감법에 따라 2019년 2월 대표이사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하여 보고받았습니다.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통제항목 체계 및 운영실적, 자가진단 결과에 대하여 보고받은 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를 작성 및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의 내부감시장치 운영현황을 보고받은 후,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평가의견서를 작성 및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11조에 의거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영구보관하고 있습니다. 의사록에는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감사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구체적인 감사위원회의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위원회 개최내역]

연도	회차	개최일자	출석/정원	안건		가결여부
				구분	내용	
2018 년	1 차	2018.05.14	3/3	결의사항	위원장 선임의 건 2018 년 1 분기 결산승인의 건 2018 년 상반기 내부감사계획 승인의 건	가결
	2 차	2018.08.13	3/3	결의사항	2018 년 반기 결산 승인의 건	가결
	3 차	2018.11.09	3/3	결의사항	2018 년 3 분기 결산 승인의 건 외부감사인 선임 평가기준 승인의 건 2019 년 상반기 감사계획 승인의 건	가결
보고사항				2018 년 하반기 감사결과 보고	보고	
2019 년	1 차	2019.01.11	3/3	보고사항	외부감사인 선정의 건	가결
	2 차	2019.02.22	3/3	결의사항	2019 년 상반기 내부감사계획 승인의 건	가결
				보고사항	대표이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FY2018 회계결산 이슈사항 보고	보고
	3 차	2019.02.28	3/3	결의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승인의 건	가결
				보고사항	내부감시장치 운영현황 보고의 건	보고
	4 차	2019.03.21	3/3	결의사항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가결
5 차	2019.05.10	3/3	결의사항	위원장 선임의 건 2019 년 1 분기 결산승인의 건	가결	

[개별 감사위원 위원회 출석현황]

구분	연도	2018 년			2019 년					비고
	회차	1 차	2 차	3 차	1 차	2 차	3 차	4 차	5 차	
	개최일자	2018.05.14	2018.08.13	2018.11.09	2019.01.11	2019.02.22	2019.02.28	2019.03.21	2019.05.10	
사외	김근수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우병창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최희주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최근 3개 사업연도 개별 이사 출석현황]

구분	성명	위원 재직기간	출석률(%)			
			재직평균	최근 3개년		
				2018	2017	2016
사외이사	김근수	2018.03.27~현재	66.7	66.7	-	-
사외이사	우병창	2018.03.27~현재	100	100	-	-
사외이사	최희주	2018.03.27~현재	100	100	-	-

※ 감사위원회는 2018.03.27 신설

2. 외부감사인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세부원칙 10-①) 내부감사기구 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선임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 선임 평가기준을 승인하고,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후보 회계법인으로부터 선임 제안서를 수령하여 충분한 검토 후, 각 감사위원별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뒤 합산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2018년 1회, 2019년 1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2018년 개최된 회의에서는 외부감사인 선임 평가기준을 승인하였으며, 감사품질 및 입찰가격의 평가 비중과 회계법인의 역량, 감사수행절차의 적정성의 점수 배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019년 개최된 회의에서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였으며, 각 후보 회계법인들의 제안서 충실도 및 감사계획, 감사시간, 감사품질, 입찰가격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향후 감사위원회에서는 개정된 외감법 및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외부감사가 종료된 후 외부감사인이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커뮤니케이션은 충실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최근 3년간 외부감사인과 비감사용역계약을 체결한 내역이 없습니다.

(세부원칙 10-②)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의 참석 없이 매 분기 외부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외감법에 따라 2018년 11월 9일,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인 한울회계법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습니다. 연간 및 세부 감사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2018 사업연도의 핵심 감사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2019년 1분기의 경우, 새로운 외부감사인과의 감사계약이 완료되지 않아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19년 5월 10일 경영진의 참석 없이 감사위원회와 새로 선임된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습니다. 감사계약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2019년 1분기의 주요 거래사항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K-IFRS 16호 운용리스 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영향 및 2019년 감사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추후 당사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은 분기별 1회 이상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할 계획이며, 핵심 감사사항 및 감사 중 발견된 중요사항에 관하여 논의할 예정입니다.

VI.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1. 계열회사의 현황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아쏘시오그룹에 속한 회사로서, 보고서 제출일 현재 동아쏘시오그룹에는 당사를 포함한 국내 16개의 계열회사가 있으며, 상장 3개사, 비상장 13개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회사 중 동천수, 수석농산, 가야산샘물은 2019년 3월 6일자로 동천수를 존속법인으로 하여 합병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연도 말일자 기준 계열회사 세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열회사 세부현황]

(2018.12.31 기준)

상장여부	상호	구분	주요업종
상장사	동아쏘시오홀딩스	지주회사	지주사업
	동아에스티	자회사	의약품 제조 및 판매
	에스티팜	자회사	원료의약품 제조 및 판매
비상장사	동아제약	자회사	의약품 제조 및 판매
	디엠바이오	자회사	의약품 제조 및 판매
	수석	자회사	포장용기 제조 및 판매
	수석농산	자회사	비알코올 음료 도매업
	용마로지스	자회사	도로 화물 운송업
	DA인포메이션	자회사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동아오츠카	자회사	비알코올 음료 제조 및 판매
	동천수	자회사	생수 제조 및 판매
	가야산샘물	자회사	생수 제조 및 판매
	철근종합건설	자회사	건설업
	동아메디케어	자회사	타회사 지분인수
	인더스파크	손자회사	부동산 임대 및 공급
	참메드	손자회사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
	비티랩스	손자회사	신약 연구개발
	엔에스인베스트먼트	기타국내계열회사	창업에 대한 투자

2. 준법경영

당사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하여 Compliance Program을 운영 중에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2015년 CP평가에서 업종 중 최고등급인 AA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당사는 Compliance Program 강화를 위해 전담조직 운영, 대표이사의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CP강화 선포식, 자율준수편람 제정, 배포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18년 7월 31일 반부패 경영시스템인 ISO 370001을 한국표준협회로부터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당사의 Compliance Program에 관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에 자율준수관리자 메시지,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조직, 운영현황, CP Standard, 자율준수편람 등의 자료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URL은 다음과 같습니다.

· http://www.donga-st.com/Pass.da?viewPath=/b01/CP_Message

또한 당사는 내부고발 신고접수 및 조사를 외부전문가에게 맡기는 독립준법자문인 제도를 2017년 12월 도입하여, 내부고발을 통한 조사 및 조치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신고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였습니다.

3. 소비자중심경영

당사는 임직원들의 소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소비자 권익 증진 노력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을 준비해왔고, 2017년 6월 처방의약품 전문 제약기업 최초로 소비자 중심경영(CCM) 신규기업으로 인증 받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2017년 1월 '고객중심경영 선언문'을 선포하고, CCM사무국인 고객만족팀을 신설하여 CCM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 임직원 CCM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CCM 홈페이지 개설, VOC(고객의 소리) 응대 시스템 구축, 사내 웹진에 매월 CCM Report 게재 등 소비자 권익 확대와 소비자 지향적 경영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불만자율관리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요구 및 불만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불만처리위원회' 운영 및 조제 약국을 방문해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개선하는 '찾아가는 CS제도' 등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 고객중심경영의 의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2월에는 'CCM Best Practice Awards'를 제정하여, 임직원들이 고객의 제안을 듣고 제품, 서비스, 제도 등 각종 경영활동에 반영하여 개선한 사례 중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VOC의 가치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설하였습니다.

Ⅶ.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구분	핵심 지표	준수여부	
		○	X
주 주	① 주주총회 4 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V
	② 전자투표 실시	V	
	③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V
	④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 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V
이사회	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V
	⑥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V	
	⑦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V	
	⑧ 집중투표제 채택		V
	⑨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V
	⑩ 6 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V
감사기구	⑪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 회 이상 교육 제공		V
	⑫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V	
	⑬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전문가 존재 여부	V	
	⑭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 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V	
	⑮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V	

[첨부] 관련 규정

(1) 정관

정 관

2013.03.04 제정

2014.03.21 개정

2018.03.27 개정

2019.03.29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상호) 이 회사는 동아에스티주식회사(영문 Dong-A ST Co.,Ltd.)라 한다.

제 2 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의약품, 의약품부외품, 화공약품, 수의약품, 농예약품, 생물학적 의약품 등의 제조, 수출 및 판매업
2. 의약품소분업
3. 연구, 개발 및 기술개발과 기술정보 등의 제공업 및 관련 용역 수탁업
4. 한약재 수출입 및 판매업
5. 의료기기, 위생용품의 제조, 수입, 임대, 수리 및 판매업
6. 식료품, 식품첨가물, 인삼제품의 제조 및 매매업
7. 화장품, 세제, 세정제, 비누, 도료, 플라스틱제품의 제조 및 매매업
8. 효소의 제조 및 매매업
9.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
10. 수입품의 판매 및 위탁업
11. 부동산 개발, 매매 및 임대업
12. 전산용역 및 임대업
13. 조림, 육림 및 약초재배업(양속제외)
14. 창고업 및 자동차 운수사업
15. 기계·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 및 매매업
16. 의약품가공수탁, 제조시설 및 기구임대업
17. 교육 서어비스업

18. 금형 및 기타장치 제조 및 매매업
19. Engineering 용역업
20. 주류 수출입 중개업
21. 통신판매업
22. 자가측정 대행업
23. 동물용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
24. 단미사료제조업
25. 주택의 건설, 공급, 판매 및 그 시공업
26. 조립식 주택사업
27. 임대주택 건설 및 임대업
28. 아파트형 공장건설, 분양 및 임대업
29. 택지, 공장부지 조성 및 공급업
30. 상가, 업무용 시설의 건설, 공급, 판매 및 그 시공업
31. 식품의 유통전문판매업
32. 인터넷 관련 전자상거래 사업
33.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 정보 등 무형자산의 판매 및 용역사업
<본호 신설 2019.03.29>
34. 시장조사, 경영자문, 경영관리대행 및 컨설팅업 <본호 신설 2019.03.29>
35. 전 각호와 관련한 일체의 부대사업 및 투자 <본호 개정 2019.03.29>

제 3 조(소재지) ①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분공장과 지점 및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 4 조(공고방법) ①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 인터넷홈페이지(<http://www.donga-st.com>)에 게재한다. (2014 년 3 월 21 일 개정)

②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항의 회사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한다.

제 2 장 주 식

제 5 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삼천만주로 한다.

제 6 조(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

제 7 조(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제 7 조의 2(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주식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삼백만주로 한다.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 이상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⑦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이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0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7 조의 3(상환주식) ① 회사는 제 7 조의 2에 따른 우선주식을 이사회 결의로 또는 우선주주의 청구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환주식의 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은 제 7 조의 2 제 7 항에 정한 우선주식의 존속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일정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써 상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기일 이전에 상환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③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액면가액, 발행가액, 발행가액에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정한

이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금액 중에서 상환주식의 발행을 결의하는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상환주식의 상환은 배당가능이익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 회사가 주주의 상환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하지 못하거나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 상환기간은 상환 및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 ⑤ 회사는 주주로부터 상환청구를 받은 날 또는 상환을 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주주로부터 주권을 제출받고 주주에게 현금으로 상환가액을 지급한다.

제 7 조의 4(전환주식) ① 회사는 제 7 조의 2 에 따른 우선주식을 우선주주의 청구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 ② 전환주식의 전환비율은 우선주식 1 주를 보통주식 1 주로 전환하는 것으로 한다.
- ③ 전환청구 기간은 제 7 조의 2 제 7 항에 정한 우선주식의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④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제 10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7 조의 5(상환전환주식) ① 회사는 제 7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우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를 전환주식인 동시에 상환주식인 것으로 정할 수 있다.

- ② 전환 및 상환에 관한 내용은 제 7 조의 3 제 2 항 내지 제 5 항 및 제 7 조의 4 제 2 항 내지 제 5 항을 준용한다.

제 8 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실물로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본항 개정 2019.03.29>

제 9 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의 범

위 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또는 외국인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주식예탁증서(DR)의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③ 제 2 항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 9 조의 2(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 9 조에서 규정하는 관계 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5 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의 범위내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 분의 90 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 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 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해당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 1 항의 결의일로부터 2 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 년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 1 항의 결의일로부터 2 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 1 항의 결의일로부터 2 년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0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9 조의 3(우리사주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우리사주조합원(근속기간이 1 년 미만인 우리사주조합원은 제외한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의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 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본항 개정 2018.03.27>

②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③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2. 우리사주조합과 이 회사간 체결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10 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1 조(명의개서대리인)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본항 개정 2019.03.29>

④ 제 3 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 12 조(삭제) <2019.03.29>

제 13 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채

제 14 조(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4 조의 1(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 총액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금전으로 환산한 액수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 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및 전환가액은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 10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5 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 총액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금전으로 환산한 액수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및 그 발행가액은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가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5 조의 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본조 신설 2019.03.29>

제 16 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 11 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본조 개정 2019.03.29>

제 4 장 주 주 총 회

제 17 조(소집시기)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후 3 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18 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 34 조 제 3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9 조(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 20 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21 조(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 34 조 제 3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2 조(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3 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 24 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이 회사와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25 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6 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7 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28 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 이사회, 감사위원회

제 29 조(이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 명 이상 7 명 이하로 한다. <본항 개정 2018.03.27>

② (삭제) <2018.03.27>

제 30 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본항 개정 2018.03.27>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본항 개정 2018.03.27>

③ 2 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 382 조의 2 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1 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 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삭제) <2018.03.27>

③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32 조(이사의 보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 29 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항 개정 2018.03.27>

제 33 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이사회는 결의에 의하여 이사 중 약간명의 대표이사,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 34 조(이사의 직무) ① 이사회 의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며, 임기는 이사 재임기간으로 한다. 의장 유고 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본항 개정 2018.03.27>

② 대표이사는 이 회사를 대표하며 회사의 전반업무를 통할한다. <본항 개정 2018.03.27>

③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일상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항 개정 2018.03.27>

제 34 조의 3(이사의 보고의무) ① 이사는 3 월에 1 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본항 개정 2018.03.27>

제 35 조(삭제) <2018.03.27>

제 36 조(삭제) <2018.03.27>

제 37 조(이사회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이를 소집하며, 이사회 소집은 회일 1 일 전에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항 개정 2018.03.27>

③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제 2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본항 개정 2018.03.27>

④ (삭제) <2018.03.27>

제 38 조(이사회 결의방법)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 397 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 398 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 또는 동시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39 조(이사회 의사록)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본항 개정 2018.03.27>

제 39 조의 2(위원회) ① 이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투자자문위원회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평가보상위원회 <본항 신설 2018.03.27>
4. 감사위원회 <본항 신설 2018.03.27>
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본항 신설 2018.03.27>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 37 조, 제 38 조 및 제 39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39 조의 3(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중 선임한다.

<본조 신설 2018.03.27>

제 40 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본항 개정 2018.03.27>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본항 개정 2018.03.27>

제 41 조(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대표이사가 상담역 또는 고문을 약간명 위촉할 수 있다.

제 6 장 계 산

제 42 조(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제 43 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①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 주 간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항 개정 2018.03.27>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 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항 개정 2018.03.27>

④ 대표이사는 제 1 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 주간전부터 본점에 5 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 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 1 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43 조의 2(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 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항 개정 2019.03.29>

제 44 조(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 45 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 월, 6 월 및 9 월말을 기준일로 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해 금전으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8.03.27>

④ 제 1 항 및 제 3 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또는 분기배당 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본항 개정 2018.03.27>

제 46 조(배당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 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 1 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③ 미지급배당금에는 이자를 부하지 아니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9 년 3 월 29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8 조, 제 11 조, 제 12 조, 제 15 조의 2 및 제 16 조의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 2019.03.29>

(2) 이사회 규정

이사회 규정

2013. 03. 04. 제정
2018. 04. 27.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동아에스티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이사회에 관한 기본사항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권한)

-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제 2 장 구 성

제 4 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사외이사 기타 비상근이사 포함)으로서 구성한다.

제 5 조 (의장)

- ① 이사회의 의장은 정관 제34조 제1항에 의거 이사 중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
<개정 2018.04.27>
- ② 의장 유고 시에는 정관 제34조 제1항에 의거 연장자 순으로 의장을 대행한다.
<개정 2018.04.27>
- ③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신설 2018.04.27>
- ④ 이사회 의장의 임기는 이사 재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8.04.27>

제 6 조 삭제 <2018.04.27>

제 3 장 회 의

제 7 조 (이사회 종류) <개정 2018.04.27>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2월, 4월, 7월, 10월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8.04.27>
- ③ 임시이사회는 긴급한 의안이 있을 때 소집한다. <신설 2018.04.27>

제 8 조 삭제 <2018.04.27>

제 9 조 삭제 <2018.04.27>

제 10 조 (소집권자)

- ① 소집권자는 정관 제37조 제2항에 의거 이사회 의장으로 한다. <개정 2018.04.27>
- ② 삭제 <2018.04.27>
- ③ 의장 이외의 이사는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18.04.27>

제 10 조의 2 (소집절차) <신설 2018.04.27>

- ①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일 3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1 조 삭제 <2018.04.27>

제 12 조 (결의의 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정관 제38조 제1항에 의거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결정한다. <개정 2018.04.27>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이사의 회사 사업기회 이용에 대한 사전승인
 2.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3. 관계사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사전승인
 <신설 2018.04.27>
- ③ 이사는 이사회의 결의권을 대리 행사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8.04.27>
- ④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8.04.27>
- ⑤ 이사는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04.27>
-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04.27>

제 13 조 (부의사항)

① 다음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1) 주주총회의 소집
- (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허용
- (3) 영업보고서의 승인
- (4) 재무제표의 승인
- (5) 정관의 변경
- (6) 자본의 감소
- (7)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개정 2018.04.27>
- (8)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 (10)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 (11)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 (1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 (13) 현금, 주식, 현물배당 결정
- (1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15) 이사, 감사의 보수
- (16)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서의 보고
- (17) 법정준비금의 감액
- (18)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 (2) 신규사업의 추진 <개정 2018.04.27>
- (3) 삭제 <2018.04.27>
- (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5)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상무보의 선임 및 해임
- (6) 공동대표의 결정
-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 (8)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9)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 (10)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 (11)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 (12) 삭제 <2018.04.27>
- (13) 삭제 <2018.04.27>

- (14) 삭제 <2018.04.27>
 - (15) 삭제 <2018.04.27>
 - (16) 중요한 사규, 사칙의 제정 및 개폐
 - (17)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 (18)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 (19)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3. 재무에 관한 사항
- (1)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기자본 100분의 10 이상인 시설투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18.04.27>
 - (2)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매출액 100분의 5이상인 단일판매 또는 공급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 <개정 2018.04.27>
 - (3)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유형자산의 취득 및 처분
<개정 2018.04.27>
 - (4)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인 출자 또는 출자 지분의 처분
<개정 2018.04.27>
 - (5)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선급금 지급, 금전 및 증권의 대여, 가지급 결정 <신설 2018.04.27>
 - (6) 신주의 발행
 - (7)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 (8) 준비금의 자본전입
 - (9) 전환사채의 발행
 - (1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11)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상인 단기자금의 차입
<개정 2018.04.27>
 - (12)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인 담보제공, 채무보증, 채무인수, 채무면제 <개정 2018.04.27>
 - (13)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 (14) 자기주식의 소각
 - (15) 결손의 처분 <개정 2018.04.27>
4. 이사 등에 관한 사항
- (1)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 (2)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 (3) 타회사의 임원 겸임
5. 기타
-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 (3) 준법지원인의 임면, 준법통제기준 제정 및 개정 <신설 2018.04.27>
 - (4)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04.27>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개정 2018.04.27>
3. 준법지원인의 준법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결과 보고 <신설 2018.04.27>
4.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상황 보고 <신설 2018.04.27>
5.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8.04.27>

제13조의2 (이사회 내 위원회) <신설 2018.04.27>

- ①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결의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 의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이사회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대하여 재결의 할 수 없다.
- ③ 각 위원회의 구성 등 세부 운영방안은 각 위원회 규정에 따르며, 위원회 규정 개정은 이사회에서 하여야 한다.

제 14 조 (관계사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사항)

- ① 회사가 관계사 및 특수관계인과 거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04.27>
- ② 관계사 및 특수관계인과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업거래의 경우 연초에 1회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는 것으로 한다. 다만,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매출액의 10% 미만인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업거래의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개정 2018.04.27>
- ③ 통상적인 영업활동과 무관한 자금거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회 전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15 조 삭제 <2018.04.27>

제 16 조 (관계인의 출석)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17 조 (직무집행감독권)

-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18 조 (간사) 이사회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둔다.

제 19 조 (의사록)

-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개정 2018.04.27>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개정 2018.04.27>
- ③ 의사록은 영구 보존한다.

제 20 조 (사외이사의 활동지원 등) <신설 2018.04.27>

- ①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직원이나 외부전문인력의 지원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에 소요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외이사만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③ 이사회는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8.04.2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3) 감사위원회 규정

감사위원회 규정

2018. 04. 27. 제정
2019. 02. 28.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이사회규정 등에 별도로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정은 위원회가 자회사를 감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 (위원회의 직무와 권한)

① 위원회는 회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한다.

1. 감사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회사 및 자회사의 모든 정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2. 관계자의 위원회 출석 및 답변 요구

3.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요청

4. 관계서류, 장부, 증빙서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

5. 금고, 장부, 기타 물품 및 보관장소 등의 봉인

6. 회사 내 감사조직의 감사업무에 대한 감독

7. 자회사 감사조직의 활용 등

8.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로부터 제2항 각 호 및 제3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 (의무)

① 감사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③ 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장 구 성

제5조 (위원회의 구성)

- ① 감사위원은 이사 중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그 임기는 이사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 ③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 상 요건을 갖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은 상법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④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이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외이사의 구성비율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장)

-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중 호선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 ③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제 3 장 운 영

제7조 (회의)

-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
- ② 정기위원회는 매 분기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임시위원회는 감사업무 수행 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제8조 (소집)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감사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감사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일 3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감사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3항의 절차 없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 (의결방법)

-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감사위원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감사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위원회의 의안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감사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1)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1)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이사회 보고 및 중지청구 여부
- (2) 영업보고의 요구
- (3)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감사에 관한 사항

- (1) 업무·재산 조사에 관한 사항
- (2) 자회사의 업무·재산 조사에 관한 사항
- (3) 회사와 이사간의 소에 관한 사항
- (4)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 시 소 제기에 관한 사항
- (5) 감사보고서 작성·제출 및 분·반기 회계결산 승인
- (6)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 평가
- (7) 외부감사인 선정 <개정 2019.02.28>
- (8) 외부감사인 해임에 대한 승인 <신설 2019.02.28>
- (9) 외부감사인 사후평가 <신설 2019.02.28>
- (10)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에 관한 외부감사인의 보고 수령 <개정 2019.02.28>
- (11)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에 관한 외부감사인의 보고 수령 <개정 2019.02.28>
- (12) 회사가 감사인 지정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 <신설 2019.02.28>
- (13) 회사가 지정감사인 재지정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 <신설 2019.02.28>

제11조 (의사록)

-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감사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③ 의사록은 영구 보존한다.

제12조 (규정의 개정) 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9.0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2017.09.22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 내에 설치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권한)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후보의 추천권을 가진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6 제2항의 주주제안권에 의하여 후보가 적법하게 추천된 경우, 해당 후보를 포함시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제4조 (구성)

-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고 한다.)은 이사회에서 선임 및 해임한다.
-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의 이사 임기로 한다.

제5조 (위원장)

-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되 사외이사 중 호선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 ③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제6조 (소집)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일 3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제3항의 절차 없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외이사후보에 대한 자격심사 및 주주총회 추천
2. 기타 사외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이사회에서 위임함 사항

제8조 (결의방법)

-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9조 (통지의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된 사항을 지체없이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 및 외부인사를 출석하도록 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써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1조 (의사록)

- ① 위원회는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12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5) 평가보상위원회 규정

평가보상위원회 규정

2013.07.10 제정

2018.04.27 개정

2019.04.19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동아쏘시오홀딩스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 이사회의 평가보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임원"이란 상무에 종사하고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거나 그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고위관리자를 의미하며 집행임원을 포함한다. <신설 2018.04.27>

제2조 (적용범위)

①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회사, 임원의 성과평가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04.27>

제3조 (위원회의 직무와 권한) <개정 2018.04.27>

① 위원회는 임원의 성과평가 및 보상에 관한 기준을 수립한다. <개정 2018.04.27>

② 위원회는 매년 회사 및 대표이사의 성과를 평가하고 제1항에서 수립한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개정 2018.04.27>

③ 대표이사를 제외한 개별 임원의 성과평가와 보상은 제1항에서 수립한 기준에 따라 대표이사가 수행한다. <개정 2018.04.27>

④ 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8.04.27>

제 2 장 구 성

제4조 (위원회의 구성) <개정 2018.04.27>

① 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② 위원회는 이사 3인으로 구성하되, 사외이사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이사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사외이사인 위원 중 호선한다. <개정 2018.04.27>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개정 2018.04.27>

③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사외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개정 2018.04.27>

제 3 장 회 의

제6조 (위원회의 소집) <개정 2018.04.27>

①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8.04.27>

② 삭제 <2018.04.27>

③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8.04.27>

④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일 3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04.27>

⑤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4항의 절차 없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18.04.27>

제7조 삭제 <2018.04.27>

제8조 삭제 <2018.04.27>

제9조 (의결방법)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동영상 또는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04.27>

제10조 (부의 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04.27>

1. 임원의 성과에 대한 평가기준 및 보상기준 수립 <개정 2018.04.27>
2. 매 사업연도 회사 및 대표이사 성과목표의 승인 <신설 2018.04.27>
3. 매 사업연도 회사 및 대표이사 성과의 평가 <신설 2018.04.27>
4.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개정 2018.04.27>

제11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및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2조 (의사록)

-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13조 (통지의무) 위원장은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27>

제14조 (간사)

-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보조하는 간사를 둔다.
- ②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8.04.27>

제 4 장 보수의 지급

제15조 (보수의 종류)

- ① 임원의 보수는 해당 직위와 개인의 실적에 따른 기본연봉과 회사 실적평가 결과에 연동하여 차별적으로 지급되는 성과연봉 및 퇴직금으로 구성한다.
-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에 관하여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 (임원의 보수)

- ① 기본급여는 <별첨1> 임원 기본급여테이블에 따르며, 기본급여의 인상률은 성과평가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8.04.27>
- ② 성과연봉은 회사의 정해진 성과평가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성과연봉의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개정 2018.04.27>

제17조 (지급방법)

- ① 기본급여는 12개월로 분할하여 월단위 정액으로 지급하며, 성과연봉은 회사 사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한다.
- ② 보수는 현금으로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망자에 대한 보수는 그 가족에게 지급한다.

제 18조 (지급일)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 19조 (단수계산) 제 보수계산에 있어서 천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절상한다.

제20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8.04.2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9.04.1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